

# 대구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2006.03.08. 교무위원회)  
(개정 2007.05.14. 교무위원회)  
(개정 2007.12.06. 교무위원회)  
(개정 2007.12.18. 교무위원회)  
(개정 2009.04.27. 대학평의회)  
(개정 2009.10.13. 대학평의회)  
(개정 2010.05.11. 대학평의회)  
(개정 2010.08.18. 대학평의회)  
(개정 2011.01.26. 대학평의회)  
(개정 2011.07.01. 대학평의회)  
(개정 2012.04.18. 대학평의회)  
(개정 2012.06.12. 대학평의회)  
(개정 2014.08.28. 대학평의회)  
(개정 2014.11.18. 대학평의회)  
(개정 2015.09.08. 대학평의회)  
(개정 2016.02.25. 대학평의회)  
(개정 2016.06.08. 대학평의회)  
(개정 2017.06.22. 대학평의회)  
(개정 2018.04.25. 대학평의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2.10. 법인이사회)  
(개정 2020.01.14. 법인이사회)  
(개정 2020.04.23. 법인이사회)  
(개정 2021.04.22. 법인이사회)  
(개정 2021.08.19. 법인이사회)  
(개정 2022.09.22. 법인이사회)  
(개정 2023.04.25. 법인이사회)  
(개정 2023.04.19. 법인이사회)  
(개정 2025.02.04. 법인이사회)  
(개정 2026.04.17. 법인이사회)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우리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우수한 재능을 지닌 예술인으로 하여금 고도의 예술실기능력을 체계적으로 연마하게 하여 이들을 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0.)

**제2조 (학과와 입학정원)** 우리 대학교의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7.12.06.)(개정 2011.07.01.)(개정 2012.06.12.)(개정 2014.08.28.)  
(개정 2014.11.18.)(개정 2019.06.20.)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개정 2019.06.20.)

② 우리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9.06.20.)

##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름, 겨울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3주 이상, 6학점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수업은 3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0.8.18.)

**제5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삭제)(2012.06.12.)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제7조 (임시휴업)**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단, 휴업기간중이라도 필요시 실험, 실습, 과제물 부과, 보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입학과 등록

**제8조 (입학 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8.18)

**제9조 (입학자격)** 우리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9.06.20.)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자

3. 법령에 의해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 자

**제10조 (편입학)** ① 우리 대학교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라야 한다.(개정 2019.06.20.)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제3학년 전체 정원의 5%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7)

③ 폐교되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편입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편입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8.)

④ 전공변경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4.18.)

(개정 2025.02.04)

⑤ 전공변경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2.04.18.)

**제11조 (입학정원 외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 출신학생은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4%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입학한다.(개정 2009. 4. 27)

**제12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 할 때에는 동일학년으로 (등록 된 학기 인정)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3조 (제적), 제6호 제38조 (성적경고), 제5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14)

③ 삭제 (2007. 5.14)

④ 전항 이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입학지원 서류)** 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0.)

1. 고등학교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모집 시에 공고함)

② 재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예고한다.

**제15조 (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6조 (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7조 (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08.19.)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1.08.19.)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신설 2021.08.19.)

③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 · 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8.19.)

## 제 5 장 휴학, 퇴학과 제적

**제18조 (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질병일 경우는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학은 등록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는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19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입영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복학하여야 할 시기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입영휴학)** 입영으로 인하여 휴학할 때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학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 (퇴학)**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5.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무 계출 결석한 자
6. 연속3회 학사 경고 자

##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24조 (교과목 구분)**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06.20.)

② 교과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1.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체육대체과목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한 교과목은 전호의 시간 이상으로 수업시간을 부과하여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국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우리 대학교와의 자매결연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간 38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 5. 11) (개정 2019.06.20.)

②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대학의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취득을 신청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06.20.)

③ 군복무 중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8)

④ 전항 이외 국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학·군 제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와 2학기를 통산하여 36학점을 초과이수 할 수 없다. 다만,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는 소정학점에서 2학점을 초과이수 할 수 있다. 단, 낙제과목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0.8.18)

**제28조 (수업시간)** 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개설교과목의 분반, 합반, 폐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전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8)

②매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수강정정 및 신청취소)** 수강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 기간(수업일수 1/3선 이내)내에 수강정정 및 취소할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전산 온라인으로 수강정정 및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31조 (시험)** 이수한 각 과목에 관한 시험은 매학기 담당교수에 의하여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되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32조 (추가시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그 성적은 A<sup>o</sup> 이상을 불허한다.

**제33조 (출석의무)**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을, 평소성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제35조 (학점인정)** D°(6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6조 (학점취소)** ①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학점 취득결과 성적이 부실한 학생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취소 및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 (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02.04)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3학년 99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②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수료를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02.04)

제1학년 30학점 이상

제2학년 60학점 이상

제3학년 90학점 이상

제4학년 120학점 이상

**제38조 (성적경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받는다.

1.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1.75에 미달하는 자

2.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3과목 이상이 “F”인 자

②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편입학 인정학점)** 편입학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졸업학점)** ① 우리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06.20.)

②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5.02.04)

**제41조 (졸업논문)** 우리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9.06.20.)

## 제 8 장 졸업논문

**제42조 (제출시기)** 졸업논문의 제출 시기는 졸업학년도의 마지막 학기로 하고 1차 제출에서 합격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수료 후 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43조 (제출방법)** 졸업논문의 제출방법은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작품제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실기발표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공고를 통해 공개 되어야 한다.

**제44조 (논문심사)** 논문의 지도 및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제도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학년 초까지 전임 및 겸임교원 중에서 위촉하고 제출된 논문을 최소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제45조 (논문의 유효)**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학생이 학점미달로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게 될 경우 졸업논문의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6조 (졸업논문 시행)**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9 장 졸업과 학위

**제47조 (졸업인정)** ① 우리 대학교의 졸업인정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도(서식1)에 의하여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미제출자와 논문심사에 불합격한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서식2)를 인정한다.(개정 2019.06.20.)

② 수여학위는 [별표2] 와 같이 한다.

(개정 2009.4.27)(개정 2010.8.18.)(개정 2011.07.01.)(개정 2012.06.12.)

③ 제1전공분야 이외의 전공분야에서 소정의 부전공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한다.(신설 2010.8.18)

④ 제1전공분야 이외의 전공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전공과 학위명을 모두 표시하여 수여한다.(신설 2010.8.18)

⑤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8.18)

⑥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연한까지 졸업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8.18.)

**제48조 (졸업취소)** 졸업생으로 제36조 제1항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 제 10 장 학생활동

**제49조 (총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간행물)**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 (학생지도)**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과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금지사항)** 학생은 수업, 연구, 행정업무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4조 (집회 및 광고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 및 광고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1 장 포상과 징계

**제55조 (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8.18.)(개정 2019.06.20.)(개정 2020.01.14.)

**제56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 ① 학생이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 제 12 장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

**제58조 (수업료)**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할 때에 수업료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02.04)

**제59조 (기타 납입금)** ① 기타의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징수한다.

**제60조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의 분납 및 연기)** ① 학생은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의 납부를 분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납부를 분납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납부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할 경우의 최초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 납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 이외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1조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 감면제한)**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는 감면되지 않는다.

**제62조 (수업료 등의 반환)** 일단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제63조 (체납자 조치)** 총장은 수업료 체납자에 대하여 출석정지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 13 장 장학

**제64조 (장학금)**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5조 (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 미지급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66조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4 장 외국인 학생

**제67조 (외국인 및 특례 입학대상자의 입학)** 법령에 의하여 특례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인 및 외교관등의 자녀로서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할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06.20.)(개정 2025.02.04)

**제68조 (준용)**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 15 장 공개강좌

**제69조 (공개강좌)** 우리 대학교의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6.20.)

**제70조 (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16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71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우리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원, 신문방송국, 평생교육원, 백운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27)(개정 2010.8.18)(개정 2011.1.26)(개정 2019.06.20.)

②우리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로 문화예술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6.20.)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

를 따로 정한다.

## 제 17 장 직제 및 평가

**제72조 (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9.06.20.)

**제73조 (자체평가)** ①우리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09. 10. 13)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0. 13)

## 제 18 장 대학평의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1. 1.26)

**제74조 (대학평의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①우리대학교에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며,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우리대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9 장 교수회

**제75조 (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둔다.(개정 2019.06.20.)

**제76조 (교수회의 조직)**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06.20.)

**제77조 (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 20 장 교무위원회

**제79조 (교무위원회의 설치)** 우리 대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6.20.)

**제80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속, 부설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성원 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제81조 (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2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3조 (교무위원회 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1 장 각종위원회

**제84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 장 학점은행제(신설 2016.02.25.)

**제85조 (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전공 60학점 이상 등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야 함)을 우리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2. 학사학위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야 함)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을 포함 한다.

**제86조(학위수여)** ①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 동의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표2]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7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 제 23 장 학부운영(신설 2022.09.22.)

**제88조(학부운영)** ① 학부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② 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규정 내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전공배정 전에는 학부장의 승인과 전공배정 후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9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는 2007년 9월 1일전 재입학한 재학생 전체에 적용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서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서기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한국미술콘텐츠, 미술콘텐츠전공과 관악, 공연음악전공 구분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 [별표 1]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공명칭 변경 전 입학한 재적생이 졸업시 변경전 전공명으로 졸업을 희망할 때는 입학당시 전공명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하부조직 명칭은 정

관 변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입학생은 명칭 변경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입학생은 통합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당시의 전공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4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시각디자인전공, 스페이스디자인전공, 실용음악전공은 모집중지하며, 2023학년도 디자인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승급 시 시각디자인전공 또는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승급한다.

② 회화작가전공을 신설하고, 학위명은 미술학사로 한다.

③ 공연융합예술전공은 공연융합예술학과 음악전공, 무용전공으로 구분하여 입학정원을 정하고, 학위명은 공연융합예술 음악학사, 무용학사로 한다.

제3조(전공 모집 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중지 전공으로의 재입학은 학칙 37조에 따라 인정된 학년에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개정 2024.04.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모집 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중지 전공으로의 재입학은 학칙 제37조에 따라 인정된 학년에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개정 2025.02.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04.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04.17.)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7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애니웹툰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주간	149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게임·웹툰전공		주간		
예체능학부	공연융합예술학과	음악전공	주간	45	
		무용전공	주간	45	
	회화작가전공		주간	60	
국제학부	건축기술디자인학과		주간	1	
	국제스포츠학과		주간		
	국제관광경영학과		주간		
	시각콘텐츠학과		주간		
	뷰티아트학과		주간		
	한국어·복지학과		주간		
	합계		주간	300	

[별표1]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6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애니웹툰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주간	149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게임·웹툰전공		주간		
예체능학부	공연융합예술학과	음악전공	주간	45	
		무용전공	주간	45	
	회화작가전공		주간	60	
국제학부	건축기술디자인학과		주간	1	
	국제스포츠학과		주간		
	국제관광경영학과		주간		
	시각콘텐츠학과		주간		
	뷰티아트학과		주간		
	한국어·복지학과		주간		
합계			주간	300	

(개정 2024.04.19.)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5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애니웹툰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주간	149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게임·웹툰전공	주간			
예체능학부	공연융합예술학과	음악전공	주간	45	
		무용전공	주간	45	
	회화작가전공	주간	60		
국제학부	건축기술디자인학과	주간	1		
	국제스포츠학과	주간			
	국제관광경영학과	주간			
	시각콘텐츠학과	주간			
	뷰티아트학과	주간			
	한국어·복지학과	주간			
	합계	주간	300		

(개정 2023.04.25.)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4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애니웹툰학부	피규어메타버스전공	주간	130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게임·웹툰전공	주간			
예체능학부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주간	45		
	공연융합예술학과	음악전공	주간	25	
		무용전공	주간	25	
	스포츠지도전공	주간	45		
	회화작가전공	주간	30		
	합계	주간	300		

(개정 2022.07.16.)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3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애니웹툰학부	피규어메타버스전공	주간	149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게임·웹툰전공	주간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88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주간		
	스페이스디자인전공	주간		
예체능학부	공연융합예술전공	주간	28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스포츠지도전공	주간	28	
	합계	주간	330	

(개정 2021.04.22.)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2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아트&이노베이션전공	주간	25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30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35	
	산업디자인전공	주간	30	
	게임·웹툰전공	주간	35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주간	28	
	공연융합예술전공	주간	28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응용스포츠산업전공	주간	28	
	복지&심리상담전공	주간	28	
	피규어메타버스	주간	26	
	합 계		주간	330

(개정 2020.04.23.)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1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아트&이노베이션전공	주간	25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35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주간	40	
	패션코스메틱디자인전공	주간	28	
	건축실내디자인전공	주간	25	
	게임·웹툰전공	주간	40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주간	28	
	창작용합예술전공	주간	25	
	공연융합예술전공	주간	28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사회체육전공	주간	28	
	예술심리치료전공	주간	28	
	자율전공	주간	20	
	합 계	주간	387	

(개정 2019.12.10.)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20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아트&이노베이션전공	주간	24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주간	28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주간	34	
	K-패션디자인전공	주간	26	
	건축실내디자인전공	주간	24	
	디지털게임웍툰전공	주간	34	
	모바일콘텐츠전공	주간	25	
	공연음악전공	주간	24	
	건반음악전공	주간	28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실용무용전공	주간	24	
	사회체육전공	주간	28	
	경호보안전공	주간	24	
	예술치료전공	주간	26	
	자율전공	주간	10	
	합 계		주간	430

(개정 2018.04.27.)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9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과 서양화전공 미술콘텐츠전공	주간	40 (20) (20)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주간	28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주간	26	
	K-패션디자인전공	주간	26	
	건축실내디자인전공	주간	24	
	모바일게임웹툰전공	주간	27	
	공연음악전공	주간	24	
	피아노교수학전공	주간	28	
	교회실용음악전공	주간	24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실용무용전공	주간	24	
	사회체육전공	주간	28	
	경호보안전공	주간	24	
	예술치료전공	주간	26	
	자율전공	주간	10	
	합 계		주간	430

(개정 2017.06.23.)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8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과 서양화전공 미술콘텐츠전공	주간	40 (20) (20)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주간	28	
	시각디자인전공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주간	26	
	K-패션디자인전공	주간	26	
	건축실내디자인전공	주간	24	
	모바일미디어디자인전공	주간	27	
	공연음악전공	주간	24	
	피아노교수학전공	주간	28	
	교회실용음악전공	주간	24	
	실용음악전공	주간	37	
	실용무용전공	주간	24	
	사회체육전공	주간	28	
	경호보안전공	주간	24	
	예술치료전공	주간	26	
	자율전공	주간	10	
	합 계	주간	430	

(개정 2016.08.23.)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7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콘텐츠	주간	24	
	서양화	주간	26	
	사진영상미디어	주간	32	
	시각디자인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	주간	26	
	K-패션디자인	주간	28	
	건축실내디자인	주간	24	
	모바일미디어디자인	주간	24	
	공연음악	주간	24	
	실용음악	주간	37	
	피아노교수학	주간	32	
	교회실용음악	주간	24	
	실용무용	주간	24	
	사회체육	주간	28	
	경호보안	주간	24	
	예술치료	주간	32	
	자율전공	주간	20	
	합 계	주간	463	

(개정 2011.7.1.)(개정 2012.4.18.)(개정 2012.06.12.)(개정 2014.08.28.)

(개정 2014.11.18.)(개정 2015.09.08.)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6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콘텐츠	주간	24	
	서양화	주간	28	
	사진영상	주간	34	
	시각디자인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	주간	26	
	패션디자인	주간	24	
	건축실내디자인	주간	24	
	뷰티예술	주간	24	
	공연음악	주간	24	
	실용음악	주간	37	
	피아노교수학	주간	32	
	교회실용음악	주간	24	
	실용무용	주간	24	
	사회체육	주간	28	
	경호보안	주간	24	
	예술치료	주간	32	
	자율전공	주간	20	
	합 계		주간	463

[별표1]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5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콘텐츠	주간	24	
	서양화	주간	28	
	사진영상	주간	37	
	시각디자인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	주간	24	
	패션디자인	주간	24	
	건축실내디자인	주간	24	
	뷰티예술	주간	24	
	피아노	주간	29	
	공연음악	주간	24	
	실용음악	주간	37	
	피아노교수학	주간	24	
	교회실용음악	주간	24	
	실용무용	주간	24	
	사회체육	주간	28	
	경호보안	주간	24	
	예술치료	주간	30	
	합 계	주간	463	

(개정 2014.11.18.)

[별표1]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2014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미술콘텐츠	주간	24	
	서양화	주간	28	
	사진영상	주간	37	
	시각디자인	주간	34	
	영상애니메이션	주간	24	
	패션디자인	주간	24	
	건축실내디자인	주간	24	
	뷰티예술	주간	24	
	피아노	주간	29	
	공연음악	주간	24	
	실용음악	주간	37	
	피아노교수학	주간	24	
	교회실용음악	주간	24	
	실용무용	주간	24	
	사회체육	주간	28	
	경호보안	주간	24	
	예술치료	주간	30	
합 계		주간	463	

(개정 2011.7.1.)(개정 2012.4.18.)(개정 2012.06.12.)

[별표1]

학과(전공)편성 및 입학정원표

2013학년도

(단위 : 명)

구 분	전 공 명	주·야간	정 원	비 고
예체능학부	사진영상	주간	463	
	미술콘텐츠			
	서양화			
	시각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패션디자인			
	건축실내디자인			
	뷰티예술			
	실용음악			
	피아노			
	공연음악			
	피아노교수학			
	교회실용음악			
	사회체육			
	경호보안			
실용무용				
예술치료				

(개정 2009.04.27.)(개정 2010.08.18.)(개정 2011.07.01.)(개정 2012.06.12.)  
 (개정 2017.06.23.)(개정 2021.04.22.)

[별표2]

### 전공별 학위 종류

구 분	전 공 명	학 위 명	비 고
1	사진영상미디어	미술학사	
2	아트&이노베이션	미술학사	
3	서양화	미술학사	
4	시각디자인	미술학사	
5	영상/만화애니메이션	미술학사	
6	패션코스메틱디자인	미술학사	
7	건축실내디자인	미술학사	
8	게임·웹툰	미술학사	
9	디지털융합디자인	미술학사	
10	산업디자인	디자인학사	
11	피규어메타버스	미술학사	
12	건반음악	음악학사	
13	공연융합예술	공연융합예술학사	
14	교회실용음악(C.C.M)	음악학사	
15	실용음악	음악학사	
16	실용무용	무용학사	
17	경호보안	체육학사	
18	응용스포츠산업	체육학사	
19	복지&심리상담	복지&심리상담학사	
20	방송연예	방송연예학사	